

오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

제정 2002년 12월 26일 조례 제 733호
 개정 2003년 9월 19일 조례 제 756호
 (도시계획조례)
 전부개정 2017년 9월 26일 조례 제1602호
 (제명개정)
 일부개정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693호
 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 일부개정 2019년 9월 30일 조례 제1739호
 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 일부개정 2020년 7월 10일 조례 제1795호
 (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
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)
 전부개정 2021년 5월 17일 조례 제1914호
 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) ①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·생활숲·가로수(이하 “도시숲등”이라 한다)의 조성·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·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도시숲등 조성·관리 업무 담당 국장 및 소장이 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, 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특정

오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

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1. 도시숲등 조성·관리 업무 담당 과장
 2. 도시숲등 조성·관리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 3.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
 4.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-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⑥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3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회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, 전자우편,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에 위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도시숲등 조성·관리 담당 팀장이 된다.

제6조(가로수의 조성·관리에 관한 승인)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외의 자(이하

“원인자”라 한다)가 가로수의 조성·관리와 관련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비용부담 등) ① 제6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(危害)로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훼손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고 징수된 부담금으로 복구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. 다만, 가로수의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,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부칙 <2021. 5. 17 조례 제1914호 전부개정>

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비용부담의 산정기준(제7조제5항 관련)

구분	내 용
원 인 자 부 담 금	1. 이식을 원하는 경우 가.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(오산시장의 승인 및 감독) - 신규 식재를 기준으로 한 도급공사비(하자보증금으로 보증보험증권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예치) 나. 오산시장이 이식하는 경우 -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비(세입세출외현금예치) 2. 제거하는 경우 가.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(오산시장의 승인 및 감독) - 신규 식재를 기준으로 한 도급공사비 나. 오산시장이 제거하는 경우 - 신규 식재를 기준으로 한 도급공사비(제거비용 포함)
훼손 자 부 담 금	1. 벌채, 수간절단 등의 피해로 조경수 가치가 없어 교체해야 하는 경우 -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비 2.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- 수목비의 20% +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※ 강도의 가지치기 : 수관의 1/3이상 3. 약도의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- 수목비의 10% +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
○ 도급공사비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의한 원가계산 (수목비 등 재료비 포함)을 적용하여 설계된 공사비 ○ 수목비: 가격정보지(조경수협회)가격적용,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시가 적용 ○ 납부방법 : 이식·제거·훼손에 따른 부담금은 세외수입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함. ○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: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때를 대비하여 도급공사비를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라 현금으로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예치 ○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: 예치기간이 경과 후 이식목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하여 이상이 없으면 예치한 담보금을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	

■ 오산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[별지 제1호서식]

가로수의 조성(식재·이식·제거·가지치기)승인 신청서					
신청인	성 명(명칭)			생년월일	
	주 소				연락처
사 업 대 상	가로수 위치				
	수 종		규격	수 고 : 흉고직경 : , 근원직경 :	수량
사 유					
작 업 방 법					
작 업 기 간	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(일간)			
부담금	금 액	금 원정()			
	납부기간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오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오 산 시 장 귀하</p>					
구비서류 1. 사업계획서 2. 위치도 3. 현황도 4. 보·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					

오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

■ 오산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[별지 제2호서식]

가로수의 조성(식재·이식·제거·가지치기)승인서					
신청인	성 명(명칭)				생년월일
	주 소				연락처
사 업 대 상	가로수 위치				
	수 종	규격	수 고 : 흉고직경 : , 근원직경 :	수량	본
사 유					
작 업 방 법					
작 업 기 간	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(일간)			
부담금	금 액	금 원정()			
	납부기간				
「오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.					
년 월 일					
오 산 시 장 직인					